

# 가정 폭력 희생자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 번호



사회 각계 각층의 어느 누구든지 가정 폭력 또는 괴롭힘, 학대의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라면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에서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개인 신상 서류를 수집하고 대피처를 확보하는 등의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때로, 가해자로부터 피신하고 더 심한 폭력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신분을 부여 받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보장 번호를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항상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괴롭힘을 당하거나 학대 받거나 또는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는 새로운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해 드릴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하려면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 번호를 변경하면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관련 업무, 고용 및 기타 사회 생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의료, 고용 및 기타 기록이 과거 사회보장 번호와 이름(이름까지도 변경하는 경우)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변경할 계획이라면, 새로운 사회보장 번호 신청 전에 개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새로운 사회보장 번호 신청 절차

어느 사회보장 사무소에서나 신청가능하며 반드시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번호 신청 사유서 작성과 신청 절차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 폭력이나 학대를 문서화한 증거;
- 현재 사용 중인 사회보장 번호;
- 다음의 원본 증빙 서류:
  - 미국 시민권 또는 이민 지위
  - 연령
  - 신원
  - 이름을 변경한 경우 개명이 합법적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한 자녀의 사회보장 번호도 새로이 신청한 경우 해당 자녀를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원본 서류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연령 및 신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시민권 또는 이민 지위

미국 시민권자: 오직 몇 가지 특정 서류만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에에는 미국 출생 증명서, 미국 영사관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 미국 여권, 귀화 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비시민권자: 미국 이민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유효한 미국 이민 서류로서 미국 도착 시 발급된 I-94, Arrival/Departure Record (즉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1 또는 M-1 학생인 경우,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비이민자 학생 지위 인증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J-1 또는 J-2 비자를 소지한 교환 교수의 경우, 반드시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us (교환 교수 지위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령

출생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의 확보가 용이한 경우 반드시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여권이나 국토 안보부(DHS)에서 발행한 서류 등을 연령 입증용 서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신원

몇 가지 특정 서류만이 신원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현재 유효한(만기되지 않은) 서류이어야 하고 성명, 신원 확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미국 운전 면허증, 주에서 발행한 비운전자 신분증이나 미국 여권을 신원 확인 증빙 서류로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특정 서류 제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 사원증;
- 학생증;
- 결혼 증명 서류;
- 의료 보험 카드(메디케어 카드가 아님);
- U.S. 군인증;
- 입양 판결문; 또는
- 생명 보험 증서.

비시민권자: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현재 유효한 미국 이민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접수 가능한 이민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Form I-551 (기계 판독이 가능한 이민 비자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포함)
- I-94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DHS에서 발급한 취업 허가서(I-766 또는 I-688B).

(뒷장)

## 개명

결혼, 이혼, 법원 명령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합법적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회보장 사무소로 이를 통보하여 새로운 카드로 교체해야 합니다. 직장이 있다면 고용주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름이 변경된 사실을 사회보장 사무소에 알리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환급 지연; 그리고
- 귀하의 임금이 사회보장 사무소로 정확히 통보되지 않아 향후 귀하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카드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최근에 발행된 것으로서 개명이 합법적임을 보여주는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합법적 개명임에 대한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 결혼 증명 서류;
- 이혼 판결문;
- 새로운 이름이 기재된 귀화 증명서; 또는
- 개명을 허가한 법원 명령서.

합법적 개명 증명으로서 제출한 서류가 신원을 확인하기에 충분치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반드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 이혼 또는 결혼 무효: 결혼, 이혼 또는 결혼 무효를 증명하는 법률서류와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귀하께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귀하의 기존이름이 있어야 하고 귀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만료된 서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귀화 또는 다른 이름변경: 새 이름을 이용하는 법률서류, 법원 명령이나, 입양 법령 또는 귀화 증명서와, 다음과 같은 두개의 신원 증명 서류를 귀하께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 그리고
- 법적으로 승인된 새로운 이름으로 작성된 또 다른 서류.

성명 외에, 이 서류들에는 반드시 신원 확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 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으로서 사회보장 사무소 기록상 시민권자임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미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현재 유효한 이민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신규로 발급된 사회보장 카드 번호는 이전 카드 번호와 동일하나 이름은 변경된 이름으로 기재될 것입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행 기관의 검증을 받은 사본이어야 합니다. 복사본 또는 공증본 서류들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가지 서류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여권은

시민권과 신원 증빙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 출생 증명서를 연령 및 시민권 확인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최소한 두 가지 종류의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가 사회보장 사무소에 모두 제출되고 신원 증빙 서류를 발행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이 끝나는 대로 즉시 새로운 사회보장 번호와 사회보장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 가정 폭력 피해 확인에 필요한 증명 제출

학대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경찰이나 의료진과 같은 제 3자로부터 얻어지는 증거로서 괴롭힘, 학대, 생명 위협의 성격과 정도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기타 증거에는 법원에 의한 접근 금지 명령과 피신처에서 발행한 서신, 가족, 친구, 상담원 또는 가정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 알고 있는 기타 사람들의 진술이 포함됩니다. 이외 추가 증거를 필요로 할 경우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려면

사회보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 그리고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안내문들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http://www.socialsecurity.gov) 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이용 전화 1-800-772-1213 번 (청각장애인은 TTY 번호, 1-800-325-0778) 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특정 문의 전화 상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 전화 응답 서비스를 통해 하루 24 시간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회보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통역 서비스는 전화를 할 때나 사회보장국 지국에서 상담을 할 때나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1-800-772-1213 으로 전화하십시오. 1번을 누르고 담당자가 대답할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통역관이 귀하의 통화를 도와 주기 위해 연결될 것입니다. 업무가 전화로 처리될 수 없을 경우, 사회보장국 담당자와 면담 약속을 잡아 드리며, 귀하가 방문하는 시간에 통역관을 배치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전화 통화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보장 사무국에서는 일부 전화를 선정하여 통화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정 폭력 상담 전화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SAFE(7233)  
(청각 장애인용 전화)  
1-800-787-3224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Publication No. 05-10093-KOR  
New Number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Korean)  
October 2006